

금강·공주 금강하구언 II 권역 하천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2021. 08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제 1 장 계획의 목적 및 개요

1.1 계획의 목적

- 과거 하천기본계획은 하천, 행정구역 단위로 수행되어 왔으나, 국가하천에 비해 지방 하천의 수립율이 상대적으로 낮아 하천의 유지관리상 어려움이 있고, 수계내 하천간의 기본계획 수립시기, 수립주체 등이 서로 상이하여, 기본계획 수립 및 이에 따른 사업 추진시 협의·조정애 어려움이 따르는 등 여러 문제로 인하여 권역별 하천기본계획 수립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음
- 본 과업은 금강공주+금강하구언Ⅱ권역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서 본 과업범위 내 유역의 현재와 미래의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홍수와 가뭄으로부터 보다 안전하고, 생태환경적으로 더욱 건강하며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하천이 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이에 하천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본 과업범위 내 하천의 합리적이고 종합적인 관리를 위한 정책방향, 하천정비, 유지관리 및 보전계획 등을 수립하고자 함

1.2 계획의 개요

1.2.1 추진경위 및 계획

- 2021. 04~06 :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 심의
- 2021. 11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제출(예정)
- 2022. 02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제출(예정)

1.2.2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 근거

- 본 사업은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계획의 종류) [별표2] 규정에 의거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임

〈표 1.2-1〉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 근거

구분	개발기본계획의 종류	협의 요청시기
자. 하천의 이용 및 개발	3) 「하천법」 제25조에 따른 하천기본계획	「하천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리청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1.3 하천기본계획 수립근거

- 하천기본계획은 하천의 이용 및 자연친화적 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하천법 제25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에 의거 10년마다 수립하고 수립된 연도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하천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음
- 수립된 하천기본계획에 따라 향후 하천의 공사를 시행하려면 「하천법 제27조」에 의거 하천정비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하천법	하천법 시행령
제25조(하천기본계획)	제24조(하천기본계획의 수립)
<p>제25조(하천기본계획) ① 하천관리청은 그가 관리하는 하천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의 이용 및 자연친화적 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 등을 내용으로 하는 10년 단위의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유역종합치수 계획 등과의 연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하천관리청인 하천에 대하여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관계 하천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p> <p>③ 하천관리청은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p> <p>④ 하천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하천관리청은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⑥ 제9조는 2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지방하천에 대하여 시·도지사가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준용한다.</p> <p>⑦ 제7조제6항은 하천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하여 준용한다.</p>	<p>제24조(하천기본계획의 수립)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하천기본계획(이하 "하천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하천유역의 국토계획 및 도시·군계획 등에 대한 변동상황을 고려하여 공통유역도(국토교통부장관이 이수·치수·환경을 고려하여 전국을 권역별로 구분한 유역도를 말한다)를 기본으로 권역별로 수립하여야 한다.</p> <p>② 하천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하천기본계획의 목표 2. 하천의 개황(概況)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유역의 특성 등 일반현황 나. 강우·기상 등 자연조건 다. 하천의 수질 및 생태 라. 수해 및 가뭄의 피해현황 마. 하천수의 이용현황 바. 하천유역의 지형·지물 등을 파악하기 위한 측량기준점에 관한 사항 3. 제방·댐·저류지·홍수조절지·방수로 등 홍수방어시설의 홍수방어계획 4. 토지이용계획 등에 따른 홍수방어계획 5. 홍수방어계획의 연차별 시행 방안 6. 하천공사의 시행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기본홍수량(제방·댐·저류지·홍수조절지·방수로 등 홍수방어시설의 홍수조절계획을 반영하지 아니한 자연상태의 홍수량을 말한다) 및 홍수량의 배분에 관한 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나. 계획홍수량 다. 계획홍수위 라. 계획하폭 및 그 경계 마. 하도(河道)와 유황(流況)의 개선 7. 하천구역·하천예정지 및 홍수관리구역의 설정을 위한 기초자료의 제공에 관한 사항 8. 자연친화적 하천 조성에 관한 사항 8의2.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폐천부지등의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하천의 환경보전과 적절한 이용에 관한 사항
제27조(하천공사시행계획)	
<p>제27조(하천관리청의 하천공사 및 유지·보수) ① 하천관리청(제28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하천공사를 대행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하천공사를 시행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공사의 시행에 관한 계획(이하 "하천공사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하천공사를 시행하려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1.4 계획의 내용

가. 계획명 : 금강·공주 금강 하구언 II 권역 하천기본계획

나. 위 치 :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공주시, 부여군, 청양군 지방하천 6개소
(과업연장 130.25km)

다. 규 모

수행공정 권역별	하천기본계획	
	하천명	과업연장(km)
금강공주 하구언II 권역	지천, 삼성천, 봉곡천, 대교천, 유구천, 마곡천(6개소)	130.25

라. 계획수립기관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마. 승인기관 :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하천별 관할구역 해당 시·도)

바. 계획수립기간 : 2020 ~ 202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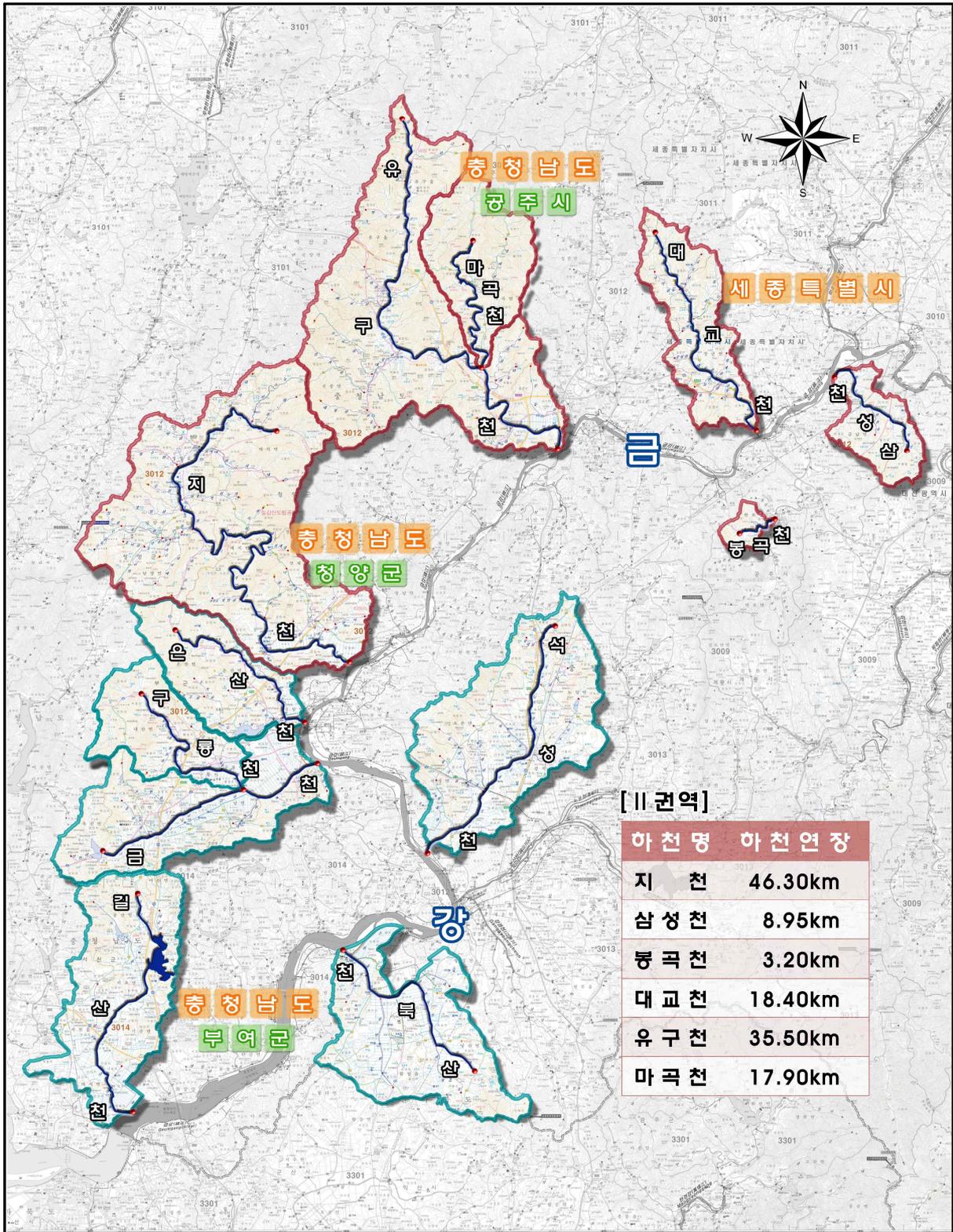
사. 계획내용

1) 계획의 범위

- 금회 대상하천은 금강·공주 금강하구언II 권역으로 총 6개 하천, 130.25km임

〈표 1.4-1〉 과업대상 하천 현황

권역	하천명	위 치		과업 연장 (km)
		시점	종점	
금강 공주 하구언 II 권역	지천	충남 청양군 대치면 이화·시전리계	충남 부여군 규암면 금강(국가) 합류점	46.30
	삼성천	대전 유성구 구룡동 332	세종 금남면 금강(국가) 합류점	8.95
	봉곡천	충남 공주시 반포면 봉곡리 424, 412	세종 금남면 용수천(지방) 합류점	3.20
	대교천	충남 공주시 의당면 덕학리 223-2	세종 한솔동 금강(국가) 합류점	18.40
	유구천	충남 공주시 유구읍 탐곡·덕곡·추계리계	충남 공주시 우성면 금강(국가) 합류점	35.50
	마곡천	충남 공주시 유구읍 구계리 135-5	충남 공주시 사곡면 유구천(지방) 합류점	17.90
	소 계	6개 하천		130.25



(그림 1.4-1) 위치도

2) 하천기본계획 내용

가) 치수, 이수, 환경이 조화된 하천기본계획수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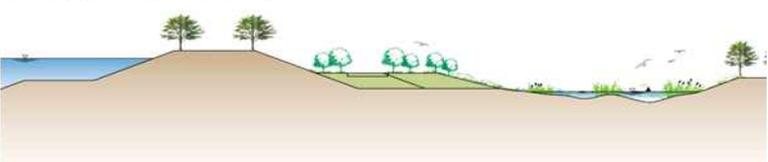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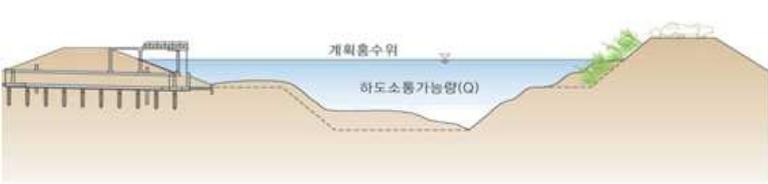
- 하천 치수상의 안정성 확보 및 하천 본래의 생태적 환경 고려
- 생태환경 고려한 사면보호, 유지유량 확보 등을 통한 친환경적 하천조성
- 치수 및 이수기능, 환경보전 뿐 아니라 인간생활과 조화로운 하천조성

나) 홍수량, 홍수위, 하폭, 하천구역, 홍수방어계획빈도 결정

- 하천의 계획홍수량을 고려한 횡단계획 수립
- 향후 주변 개발계획을 고려한 홍수방어계획 수립
- 가용 가능한 하천부지 활용 및 주민 사유권침해 최소화 계획 수립

다) 하천의 기능 유지를 위한 관리계획 수립

- 폐천부지 및 유희지를 이용하여 본래 하천공간복원 계획 수립
- 하천의 생태기능 보존을 고려한 하천기본계획 수립
- 하천부속 시설물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으로 사업효과 극대화

<p>조화로운 하천관리</p>		
<p>안전한 하천관리</p>		
<p>바람직한 하천관리</p>		

3) 유형별 하천기본계획 수립방향

구분	산지 하천	농경지 하천	도시 하천
정비 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방댐 설치 · 안정하상 계획 · 횡단구조물의 충분한 통수능력과 공간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강화 지양 · 하천공간 복원(홍수터, 천변저류지, 습지 등) · 생태환경적이며 안전한 호안공법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천공간 복원(천변 저류지) · 생태환경적이며 안전한 호안 공법 도입 · 자연환경에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친수시설 도입

제 2 장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2.1 개발계획의 대상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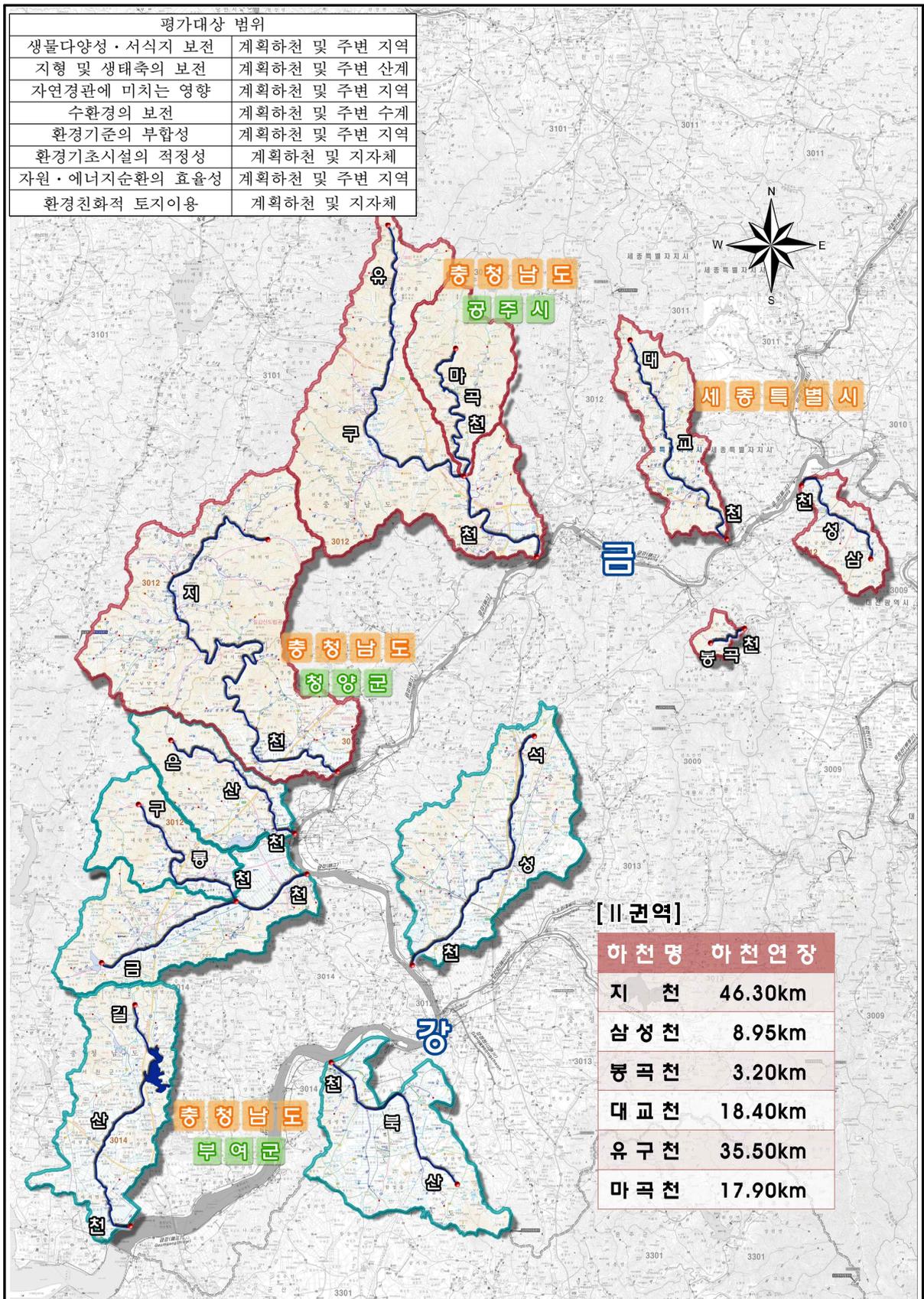
- 본 계획의 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이 직·간접적으로 유발될 것으로 예상되는 행정구역을 공간범위로 설정하였음
- 공간범위 :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공주시, 부여군, 청양군 일원

2.2 평가대상지역의 설정

- 본 계획의 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범위를 결정하기 위해 사업계획의 특성, 대상지의 입지여건 및 환경영향 요인 분석을 통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설정하였음

〈표 2.1-1〉 대상지역의 설정

구 분		평가대상지역 선정기준	평가 대상지역 범위	
계획의 적정성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 상위 행정계획 및 다른 행정계획과의 부합여부 파악을 위한 광역범위 설정	○ 계획하천 및 지자체	
	대안 설정·분석의 적정성	○ 계획비교 등 대안별 비교·분석을 위한 광역 범위 설정	○ 계획하천 및 주변 지역	
입지의 타당성	자연 환경의 보전	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	○ 수생 및 수변식물의 식생변화가 예상되는 지역 ○ 육상 및 육수동물상에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 ○ 환경관련 보호지역 등 자연환경자산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 ○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분류군별 조사범위 고려	○ 계획하천 및 주변 지역
		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	○ 계획시행으로 인한 하천 지형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	○ 계획하천 및 주변 산계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 하천기본계획 구간, 주변 경관자원 분포 및 경관변화 등의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	○ 계획하천 및 주변 지역
		수환경의 보전	○ 하천유역 오염부하량 검토 ○ 홍수량 및 홍수위변화 등의 수리수문변화가 예상되는 지역	○ 계획하천 및 주변 수계
입지의 타당성	생활 환경의 안정성	환경기준 부합성	○ 하천정비시 기상, 대기질 변화 영향예상지역 ○ 하천정비시 주변 지역의 토양 오염, 소음·진동 등 영향예상지역	○ 계획하천 및 주변 지역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 환경기초시설의 현황 파악, 공급 필요성 예상지역	○ 계획하천 및 지자체
		자원·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 계획시행시 폐자원 발생 및 온실가스 변화 예상지역	○ 계획하천 및 주변 지역
	사회·경제 환경과의 조화성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 계획시행으로 인한 토지이용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	○ 계획하천 및 지자체



(그림 2-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도

2.2 평가 항목 · 범위 · 방법 등의 설정

2.2.1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설정

가. 환경영향요소의 추출

- 본 하천기본계획에 의한 환경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개발계획의 종류 및 성격, 입지지역, 환경특성을 고려하여 장·단기적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생활환경의 안정성 및 사회경제환경과의 조화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환경영향요소를 추출하였음

〈표 2.2.1-1〉 환경영향요소의 추출

구 분	검토항목	환경영향요소	영향수준
검 토 항 목	계획의 적정성	○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 대안 설정 · 분석의 적정성	○ 상위 및 관련계획과의 일관정도 ○ 계획 수립 전 · 후의 영향 정도 +++ +++
	입지의 타당성	○ 자연환경의 보전 - 생물 다양성 · 서식지 보전 - 지형 및 생태축 보전 -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 - 수환경의 보전	- 동 · 식물 영향 - 지형변화 및 생태축 영향 - 경관 저해 및 훼손 정도 - 수환경 관련 보호지역의 영향 여부 +++ ++ ++ +++
		○ 생활환경의 안정성 - 환경기준의 부합성 -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 자원 · 에너지순환의 효율성	- 계획수립시 환경기준의 유지 · 달성 여부 - 환경기초시설 필요성 여부 - 자원, 에너지의 효율적 순환 여부 +++ + +
		○ 사회 · 경제환경과의 조화성 - 친환경적 토지이용	- 토지이용계획의 적정성 +++

주) 환경영향요소에 중요도에 따라 “+” : 영향미미, “++” : 영향보통, “+++” : 영향높음 등으로 구분함

나.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의 선정

- 본 하천기본계획 특성을 고려하여 개발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의 평가항목을 선정하였음

〈표 2.2.1-2〉 평가항목 선정

평가항목		선정사유	선정
1) 계획의 적정성			
가)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 계획 수립 시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검토 필요	○
나)대안 설정·분석의 적정성		○ 계획 수립 전·후에 대한 비교를 통하여 계획의 적정성 검토 필요	○
2) 입지의 타당성			
가)자연환경의 보전	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	○ 각종 보호지역, 생태적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의 훼손가능성 여부 등의 검토 필요	○
	지형 및 생태축 보전	○ 주요 산림축의 훼손, 생태축·녹지축 등 생태적 연속성의 단절 여부 등의 검토 필요	○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	○ 계획 수립에 따른 계획구간 및 주변 경관 자원 등의 영향 여부 검토 필요	○
	수환경의 보전	○ 각종 수환경 관련 보호지역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이 예상되는지 검토 필요 ○ 하천기본계획에 따른 홍수위 등 변화 검토	○
나)생활환경의 안정성	환경기준의 부합성	○ 계획 시행시 국가, 지역 환경기준 등의 유지·달성 여부의 검토 필요	○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 환경기초시설 현황 및 기초시설 공급 필요 여부 파악	○
	자원·에너지순환의 효율성	○ 계획 시행시 자원, 에너지가 효율적으로 순환되고 있는지 검토	○
다)사회·경제 환경과의 조화성 :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 계획시행 전·후 토지이용상의 변화 검토 ○ 공간환경관리계획	○

2.2.2 평가범위 및 방법 설정

가. 조사·예측·평가 방법 설정

- 본 계획의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위하여 선정한 평가항목별 조사, 예측방법은 아래와 같음
- 조사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업무매뉴얼, 2017.12, 환경부」, 「환경영향평가 평가범위 설정 가이드라인(대기질, 악취, 소음·진동), 2013, 환경부」에 준하여 기존자료를 충분히 활용하고 필요시 현지조사 및 탐문조사를 실시하여 기존자료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계획임
- 예측은 보전대상 등 조사시 파악된 계획지역의 환경현황을 바탕으로 계획수립으로 인하여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을 분석하고, 환경영향 정도를 정성·정량적으로 분석하여 평가할 계획임

〈표 2.2.2-1〉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별 조사·예측 방법

구분		현황조사	영향예측 방법
자연 환경의 보전	생물다양성· 서식지 보전	① 조사내용 : 자연환경자산 현황, 식물상 및 식생현황, 포유류 및 양서·파충류, 조류, 육상곤충류, 어류, 저서성대형무척추동물 ② 조사범위 : 계획하천 및 주변지역 ③ 조사방법 : 문헌자료 및 현지조사 병행	○ 계획시행에 따른 환경관련 보호지역 등 자연환경자산에 미치는 영향 예측 ○ 문헌 및 현지조사 결과를 토대로 보전하여야 할 동·식물 및 서식환경을 조사하고 동·식물상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예측·분석
	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	① 조사내용 : 지형형상, 지질상황, 보전가치가 있는 지형·지질 등 ② 조사범위 : 계획하천 및 주변 산계 ③ 조사방법 : 문헌자료 및 현지조사 병행	○ 계획시행에 따른 지형변화 예측 ○ 보전가치가 있는 지형의 영향유무 검토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① 조사내용 : 계획구간 및 주변지역 위락·경관현황, 경관자원 현황, 환경관련지역 및 지구 현황 ② 조사범위 : 계획하천 및 주변지역 ③ 조사방법 : 문헌자료 및 현지조사	○ 계획구간 주변의 경관자원 분석과 구조물 설치에 따른 경관 등의 영향 예측

〈표 2.2.2-1 계속〉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별 조사·예측 방법

구분		현황조사	영향예측 방법
자연 환경의 보전	수환경의 보전	① 조사내용 : 지표수(하천), 하천저질현황 농도, 오염원현황, 계획구간 및 주변하천, 재해 및 수해 복구현황 ② 조사범위 : 계획하천 및 주변 수계 ③ 조사방법 : 측정망 및 수계를 고려한 현지 및 문헌조사 실시 ④ 조사지점 : 하천수질 및 하천저질	○ 공사시 토사유출로 인한 영향 검토 ○ 계획하천의 유지 목표수질 검토 ○ 오염부하량 검토 ○ 계획구간의 홍수량 및 홍수위 등의 수리수문 변화 검토 ○ 홍수대책 등의 치수계획 검토
	환경 기준 부합성	① 조사내용 : 대기질, 토양, 소음·진동 현황 ② 조사범위 : 계획하천 및 주변지역 ③ 조사방법 : 기존자료 및 현지조사	○ 최근 기상현황 통계자료 분석 ○ 환경현황(대기질, 토양, 소음· 진동) 측정망 자료 조사 ○ 계획수립에 따른 환경기준(대기질, 토양, 소음·진동 등)의 유지· 달성에 대한 검토
생활 환경의 안정성	환경기초 시설의 적정성	① 조사내용 : 환경기초시설 현황 ② 조사범위 : 계획하천 및 지자체 ③ 조사방법 : 기존자료 및 현지조사	○ 환경기초시설 공급 필요여부 에 대한 정성적인 검토
	자원· 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① 조사내용 :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온실가스 배출현황 등 ② 조사범위 : 계획하천 및 주변지역 ③ 조사방법 : 기존자료 및 현지조사	○ 계획수립에 따른 폐자원 발생 검토 및 자원활용계획 검토 ○ 온실가스 배출 변화 및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에너지 계획 등 검토
사회·경 제환경과 의 조화성	환경 친화적 토지이용	① 조사내용 : 용도별, 지목별 토지이용 현황 ② 조사범위 : 계획하천 및 지자체 ③ 조사방법 : 기존자료 및 현지조사	○ 계획수립에 따른 토지이용 변화 검토

2.2.3 항목별 현황조사계획

- 환경영향 평가항목 중 본 계획시행에 따른 영향을 비교·분석하기 위하여 환경질, 동·식물상 조사가 필요한 항목을 선정하여 아래와 같이 평가항목 조사계획을 수립 하였음

〈표 2.2.3-1〉 환경영향조사계획

항 목		조사지점	횟수	비고
환경질 조사	하천수질	64	2	
	하천저질	64	2	
식 물 상		계획하천	2	
육상동물	포유류, 양서·파충류, 육상곤충류		2	
	조류		2	
육수동물	어류		2	
	저서성대형무척추동물		2	

주) 대기, 토양, 소음·진동 등은 문헌 및 측정망 자료 활용

〈표 2.2.3-2〉 환경영향조사항목

구 분	조사(지점)	조사항목
하천수질	64 (약 2km 당 1지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개 항목 - 유량, 수온, pH, BOD, COD, SS, DO, T-P, T-N, 총대장균군, Chl-a, Cd, As, CN, Hg, PCB, Pb, Cr⁶⁺, ABS
하천저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3개 항목 - 입도분포, 강열감량, 유화물(황화물), T-N, T-P, COD, Cd, Cu, As, Hg, Pb, Cr, Zn
동·식물상	계획하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물상 및 식생 - 식물분포 및 식생도, 노거수 및 보호수, 기타특정식물군락 분포 현황 ○ 육상동물상 - 포유류, 조류, 양서·파충류, 육상곤충류 분포 현황 - 법정보호종, 야생생물 보호구역 및 천연기념물 분포 현황 ○ 육수생물상 - 어류, 저서성대형무척추동물 분포 현황 - 법정보호종, 특산종, 희귀종, 희소종, 특정개체군의 분포 현황

주) 조사지점은 하천연장 및 주변여건을 고려하여 선정할 계획임

제 3 장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 계획

3.1 지역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 계획

가.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의 결정내용 공개 및 의견수렴

-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 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내용은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거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을 결정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의 정보통신망 및 법 제70조제3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14일 이상 공개할 계획임

나. 의견수렴 경위

- 본 사업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5조, 동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공고 및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임

다. 의견수렴 계획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공고(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 초안 제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일간신문, 지역신문에 각 1회 이상 공고
 - 공고 후 20일 이상 40일 이내의 범위에서 공람
 - 주민은 공람 후 7일 이내에 개발계획 수립 행정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
- 설명회 및 공청회 개최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설명회를 평가서 공람기간 중 1회 실시(설명회 장소는 해당 지자체와 추후 협의)
 - 설명회 개최 7일전 중앙일간지와 지역일간지에 사업개요, 설명회 일시 및 장소 등을 각각 1회 이상 공고
 - 공청회는 주민들로부터 별도로 개최요구가 있을 경우 개최할 계획임
- 주민 등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필요시 관할 지자체 협조 하에 현수막 설치 등을 검토하여 시행할 계획임

3.2 의견수렴결과 공개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9조에 의거하여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와 반영여부를 정보통신망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14일 이상 공개할 계획임

※의견 수렴결과 공개 : 시행령 제19조

제19조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와 반영 여부를 개발기본계획 확정 이전에 개발기본계획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 또는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정보통신망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14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공청회 개최요건 : 시행령 제16조제1항

제16조 (공청회의 개최 등)

- ①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1. 제14조에 따라 공청회의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30명 이상인 경우
 2. 제14조에 따라 공청회의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5명 이상이고,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주민총수의 50퍼센트 이상인 경우

제 4 장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4.1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회 개최

- 주관부서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하천계획과
- 심의기간 : 2021년 04월 28일 ~ 06월 08일
- 심의방법 : 서면심의
- 심의내용 : 금강·공주 금강하구언II권역 하천기본계획 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 심의위원

구 분	연 번	소속기관	성 명	비 고
위원장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건설안전국	박○○	계획수립기관
위원	1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보은국토관리사무소	박○○	계획수립기관
	2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김○○	민간전문가 (위원장 위촉)
	3	금강유역환경청 환경평가과	김○○	협의기관
	4	충남연구원	오○○	민간전문가 (협의기관 위촉)
	5	충청남도 기후환경정책과	김○○	지자체
	6	대전광역시청 기후환경정책과	이○○	
	7	유성구청 푸른환경과	한○○	
	8	세종특별자치시청 환경정책과	이○○	
	9	충청남도 공주시청 하천계획팀	심○○	
	10	충청남도 청양군청 환경보호과	유○○	
	11	충청남도 부여군청 하천관리팀	노○	
	12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대표	성○○	지자체 주민대표
	13	세종특별자치시 주민대표	조○○	
	14	공주시 주민대표	강○○	
	15	청양군 주민대표	복○○	
	16	부여군 주민대표	김○○	
	17	충청남도 지속가능발전 협의회	박○○	민간전문가 (시민단체 추천)

4.2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회 의견수렴 결과

<div style="text-align: center;"> <p>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금강공주+금강하구언II권역 하천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p> </div> <p>□ 총괄 의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강공주+금강하구언II권역 하천기본계획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함에 있어 아래의 항목별 의견을 반영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작성하여야 함. <p>□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지역 설정은 적정하며, 환경기준에 부합하는 계획이 수립되어야 함. 2. 토지이용 구상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으로 토지이용 구상안 해당사항 없음. 3. 대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불량한 호안의 개량, 신설에 따른 적정계획 및 호안공법의 선정을 위한 수단·방법 대안비교를 면밀히 실시할 필요가 있음. 4.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목별 조사 및 평가 범위는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과 전략환경영향평가 업무매뉴얼 등을 참고하되, 본 사업계획의 하천 주변으로 야생생물보호구역 등이 분포하므로 생물다양성·서식지보전 항목의 경우는 조사 및 예측, 저감방안 수립에 단전을 기하여야 함.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의견 수렴 시 대상지역 주민들이 공람, 설명회 등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추진 전반에 대하여 주민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히 설명하여야 함. 6.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별도의견 없음. <p style="text-align: right;">2021. 5. 14.</p> <p style="text-align: right;">심의위원 박 [redacted]</p>	<div style="text-align: center;"> <p>국립재림 환경문제 해결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선도하는 KEI</p> <p>KEI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p> </div> <p>수신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건설관리과장) (경유)</p> <p>제목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검토의견 회신 (금강공주 금강하구언 II권역 하천기본계획)</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귀 기관의 우공한 발증을 기원합니다. 2. 건설관리과-1365(2021.04.27) 호와 관련하여 우리 연구원에 검토의뢰한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금강공주 금강하구언 II권역 하천기본계획"에 대하여 불일치가 검토의견을 회신합니다. <p>붙임 : 금강공주 금강하구언 II권역 하천기본계획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검토의견 1부, 끝.</p> <div style="text-align: center;"> <p>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장</p>  </div>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25%;">담당</td> <td style="width: 25%;">실장</td> <td style="width: 25%;">2021. 5. 7.</td> <td style="width: 25%;">분류상</td> <td style="width: 20%;">전발</td> </tr> <tr> <td>협조자</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시행</td> <td>환경평가본부-9677</td> <td>(2021. 5. 7.)</td> <td>협수</td> <td>건설관리과-1479 (2021. 5. 7.)</td> </tr> <tr> <td>후</td> <td>30147</td> <td>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립연구단지 B동 8층</td> <td>/</td> <td>www.kei.re.kr</td> </tr> <tr> <td>전화번호</td> <td>044-415-7471</td> <td>팩스번호</td> <td>/ ymkim@kei.re.kr</td> <td>/ 대국민 공개</td> </tr> </table>	담당	실장	2021. 5. 7.	분류상	전발	협조자					시행	환경평가본부-9677	(2021. 5. 7.)	협수	건설관리과-1479 (2021. 5. 7.)	후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립연구단지 B동 8층	/	www.kei.re.kr	전화번호	044-415-7471	팩스번호	/ ymkim@kei.re.kr	/ 대국민 공개
담당	실장	2021. 5. 7.	분류상	전발																						
협조자																										
시행	환경평가본부-9677	(2021. 5. 7.)	협수	건설관리과-1479 (2021. 5. 7.)																						
후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립연구단지 B동 8층	/	www.kei.re.kr																						
전화번호	044-415-7471	팩스번호	/ ymkim@kei.re.kr	/ 대국민 공개																						
<div style="text-align: center;"> <p>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금강·공주 금강하구언II권역 하천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p> </div> <p>□ 총괄 의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건은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공주시, 청양군, 부여군에 위치하는 지방하천 6개소의 하천기본계획 수립(총 130.25km)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에 대한 심의의견임 · 저천(L=46.30km), 삼성천(L=8.95km), 봉곡천(L=3.20km), 태교천(L=18.40km), 유구천(L=35.50km), 마곡천(L=17.90km) ○ 계획수립 시 치수안정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하천이 갖는 자연성 및 환경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비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함 ○ 계획하천 구간별 계획내용을 표와 도면 등을 이용하여 상세히 수록하여야 하며, 구간별 개수 및 시설물 계획에 대해 필요성 및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여 타당성을 확보하여야 함 ○ 불필요한 횡적구조물(보·낙차공)에 대해서는 하천 건강성 및 수생태계 연속성을 복원할 수 있도록 철거계획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항목별 조사결과 및 환경현황을 구간별로 비교·평가하고, 종합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홍수방어 대책의 수단·방법, 시설물의 입지 및 규모 등 세부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함 ○ 더불어 관련계획(홍수해지감소통합계획 등)과의 시설물 계획과의 연계성 검토를 구체적으로 실시하여야 함 ○ 하천별 계획 수립 시기, 수립 주체 조정을 사유로 6개 하천을 고려한 권역별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일관성 있는 수리·수량상의 검토 측면에서는 용이하나 생태적 측면에서는 지방하천으로서 각각의 하천별 고유한 특성을 하나의 전략환경영향평가로 실시하게되므로 충분한 환경적 평가가 이루어지기에 미흡한 부분도 있음. 이에 각 하천별 생태적 중요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로 실시하는 방안을 강구하거나, 각각의 하천 고유의 특성이 평가서 내 충분히 제시되어야 함 <p>□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정함 2. 토지이용 구상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하천별 생태적 특성을 고려한 치수계획 수립 3. 대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비교를 위한 대안 평가 시, 계획의 장·단점을 단순 비교하는 것이 아닌 계획의 필요성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효과 및 영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하고, 계획의 유형별(치수, 이수, 환경, 공간관리 계획)로 각각의 비교·검토를 수행하여야 함 ○ 또한 수단방법 대안의 경우 개수계획과 관련된 단순 공법(축제 및 보축 또는 하상균화)만을 비교하는 것이 아닌, 설계기준의 수준별로 효과를 비교 검토하여야 함 ○ 횡적시설물 및 호안설정 등 수단·방법에 관한 대안평가의 경우에도 하천현황을 고려하여 하천별 혹은 구간별 평가를 시행하고, 보천가치가 높은 구간에 대해 명확한 공법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 개별 계획에 대해 환경, 생태계, 토지이용 현황을 고려하여 이치수 효과(장점) 및 항목별 환경영향(단점)을 구체적으로 평가 제시하여 최적의 계획을 도출하여야 함 4.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 계절별 특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현황조사(현지 및 문헌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보천가치가 높은 하천구간(함유부, 야생생물보호구역, 법정보호종 서식지, 생태자연도 1등급지, 멸도관리지역 등)이 있을 경우 수변식생, 법정보호종 서식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보전대책 수립, 보 및 낙차공이 있을 경우 시설의 기능적 현황 검토를 실시하고 하천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필요성을 확인하여야 함. · 법정보호종 서식현황 및 출현 지점 명기 · 대규모 하중도 및 습지 존재 여부 평가 · 어도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보 및 낙차공 현황사진 및 시설물 대비 어도 설치 비율 제시 · 유속과 수량이 감소하는 곳에서의 생태적 기법에 대한 수단적 대안 적용가능 대상 시설물 개조수 분석, 제시 ○ 수환경의 보전(수질): 수질현황 및 연관된 수질관리계획과 연계하여 계획하 																									

<p>천별 목표수질을 설정하고 수질보전 및 관리방안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함. 또한 사업으로 인한 하류수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 저감대책을 마련하여야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환경의 보전(수리수문): 하천설계비도 상향조정이 있을 경우, 그 사유와 근거를 제시하여 타당성을 확보함은 물론, 기수림 대비 홍수량 변동 사항에 대한 상세한 기술이 포함되어야 함. 개수현황, 홍수이력, 하천제해위험지구 지정 등의 현황조사와 관련계획을 토대로 치수 계획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충분히 제시하여야 함. 이때 설계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하도전 구간의 치수안정성을 확보하는 시설을 위주의 계획은 지양하여야 함. 제방, 횡적구조물 등 기존 시설물 현황과 정비계획을 명확히 제시하고 사업시행 시 설계기준에 맞는 친환경적 공법을 적용하여야 함 ○ 사회-경제환경과의 조화상: 토지이용현황은 해당 하천을 중심으로 계획위험지역 및 침수피해지역 등을 포함하여 하천 주변의 토지이용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며, 공간관리계획에 따른 계획하천 구간별 지구설정 사유를 명확히 제시하여야 함 ○ 기상 및 대기질: 본 사업이 추후 실시단계에서 별도의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대상일 경우 본 전략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평가항목 제외 가능 <p>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견없음 <p>2021. 5. 6.</p> <p>심의회원 김 [redacted]</p>	<div style="text-align: center;">  <p>금강유역환경청</p>  </div> <p>수신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건설관리과장) (경유)</p> <p>제목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서면 심의의견서 회신[금강공주+금강하구연 II 권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건설관리과-1365(2021.04.27.)호와 관련하여 '금강공주+금강하구연 II 권역'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서면 심의의견서를 붙임과 같이 회신합니다. <p>붙임 심의결과 통보서 1부. 끝.</p> <div style="text-align: center;">  <p>금강유역환경청장</p> </div> <hr/> <p>주무부 [redacted] 과장 [redacted] 전달일자 5.13</p> <p>협조자 [redacted]</p> <p>시행 환경평가과-3721 협주 건설관리과-1535 (2021. 5. 13.)</p> <p>주 35220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로 417 3층 환경평가과 / http://www.me.go.kr/gg/</p> <p>전화번호 042-865-0755 팩스번호 042-865-0759 / jkokan@me.go.kr / 비공개(5.7)</p>
<p style="text-align: center;">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금강공주+금강하구연 II 권역 하천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p> <p>□ 총괄 의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천의 이·치수 기능뿐만 아니라 하천의 자연성과 생태적 건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친환경적인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대상 권역 내 환경편면지구·지역(상수원보호구역 등)이 다수 위치하고, 생태자연도 1등급 구간이 분포했으므로 해당 구간 계획 수립시 보호방안을 구체적으로 강구하여야 함 - 6개의 대상하천 중 지천의 경우 침강산 도립공원 내 위치하고, 야생동물보호구역(부여-청양 지천 미호조개 서식지)이 존재하는 등 생태환경적으로 우수하므로 원형을 최대한 보존하는 방향으로 계획 수립 - 계획하천 내 생태자연도 1등급에 속하는 구간과 1등급으로 지정할 사유를 명시하고, 보호방안을 명시 <p>□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 대상 지역은 사업 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설정하여야 함 - 대상 지역 설정 시 사유를 상세히 설명하고, 하천변 주변 현황을 도면(실측도, 항공사진 등)에 표기 - 하천정비사업이 진행중이거나 예정인 구간은 별도로 명시하고 관련 내용을 반영 2. 토지이용 구상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토지이용현황, 생태계 특성, 수질 및 수리생태적 특성과 관리목표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하천 공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3. 대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준비서에 제시된 단순 비교가 아닌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다양한 대안을 설정해 대안별로 환경적 측면을 비교·제시하고, 장·단점을 분석하여 선정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홍수량 산정 표준지침(2019년)을 적용하여 산정된 홍수량, 홍수위를 바탕으로 계획 하천 주변 치수안정성을 확보하고, 하천설계기준을 적용하여 제방여유고, 사면경사, 독마무푹 등 제시 - 하천의 이·치수 능력 확보 대안(하폭확대, 하천제방, 하도정비 등)을 계획 구간별로 상세히 비교 - 호안, 보 및 낙차공 등 횡적시설물의 환경적 기능과 제해예방적 기능을 객관적(수치적)으로 비교하고, 대안(철거, 재설치 등)을 제시하여 향후 실시단계 구간별 환경적, 수리·수문학적 특성을 반영하여 공법을 선정할 수 있도록 우선순위 제시 <p>4.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지에 따른 현황, 사업계획에 따른 영향 예측 및 저감계획을 항목별로 정량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하천 및 주변 지역에 대한 전반적인 생태 현황을 자세히 조사·제시하고, 환경적 보전 가치가 있는 지역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보전방안을 수립하여야 함 - 「환경영향평가시행 지침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20-289호)」[별표2] (자연생태환경분야의 환경현황 조사방법 및 작성양식)를 참조하여 등·식물·동물이 활발한 시기(동절기 조사 지양)에 계획하천 및 주변지역 조사 - 수질 조사는 하천 상·하류의 수질을 대표할 수 있는 지점을 선정해 현황을 파악하고 중·간·하류 목표수질과 연계한 수질목표를 설정해 관리방안 제시 - 대기질 및 소음·진동은 사업 시행으로 영향이 예상되는 주변 정온 시설을 면밀히 파악해 지점을 선정하고,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을 제시 - 지역별 대기환경기준이 존재하는 경우, 국가환경기준과 비교해 엄격한 기준을 목표로 설정 - 사업지구의 경관 변화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근·중·원경별로 가시권 분석을 시행하고, 충분한 조망점을 선정 <p>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 의견수렴 시 대상 지역 주민들이 공람, 설명회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추진 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영향을 포함하여 사업 전반에 대해 주민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히 설명하여야 함 - 공람 및 설명회와 관련하여 현수막 설치, 문자발송 등 다각적 안내 - 공람 장소는 대상 지역 내 시·군·구마다 1개소 이상 설치

- 의견수렴 과정에서 주민 등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전문용어, 수치, 조사 결과 등을 순화한 평가 요약서(사진, 그림, 수치비교 등)를 작성·제공

6. 기타(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 타당성 위주로 작성)

○ 평가서 작성 시 현지 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문헌 등을 활용하는 경우 객관성이 확보된 최신 자료를 인용하여 신뢰성을 확보하여야 함

2021. 5. 13.

심의위원 김 [redacted]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금강공주·금강하구인II권의 하천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 총괄 의견

-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목적에 부합되도록 충분한 환경현황분석, 예측, 지감방안 검토를 통하여 본 계획 내 사업이 실현되었을 경우 환경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는 지속가능한 하천정비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특히, 환경·생태 민감지역 및 중요지역의 경우 대안 적용 검토 필요)
- 각종 국가 상위계획 뿐만 아니라 충청남도(공주시, 부여군, 청양군),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내에서 최근 수립된 다양한 환경, 생태계획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본 평가준비서는 금강·공주·금강 하구인 II권역 하천기본계획 수립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범위를 설정하는 사항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은 대부분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등·식물상 항목과 대기질, 소음·진동 항목의 경우 평가대상 지역을 계획하천 및 주변지역으로 명시하였으나, 각 항목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범위를 제시하고 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음 (예시: 동물상의 경우 이동거리, 서식지 등을 고려하여 0.5km, 소음·진동의 경우 계획하천 및 경계로부터 0.3km 이내 등)
- 특히, 일부 하천의 경우 충남 광역생태네트워크의 핵심 하천축(저천, 유구천, 대포천)에 해당하며,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 국토환경성평가 1등급, 비오톱 1등급 지역(해당 시·군 비오톱지도 자료 참조 필요)에 위치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들 1등급 지역의 경우 생태적 가치가 비교적 높은 지역으로 향후 하천정비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또한, 단순히 하천의 생태축으로서의 역할 강화 뿐만 아니라 주변 산림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서식지 기능 강화 등을 고려하여 이의 단절을 최소화할 수 있는 등의 방안 강구가 필요함



2. 토지이용구상안

- 별도 의견 없음

3. 대안

- 대안 설정 및 비교·분석 내용은 대부분 적절하나, 계획비교 대안 검토 시 수환경의 보전 부분을 추가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생태계 훼손 가능성 부분은 일시적인 영향 뿐만 아니라 호안공법 설정에 따라 황적 연결성 부분에 단절을 초래할 수도 있으므로 향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4.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 부문별 환경영향조사(현장조사)의 경우 각 조사 분야에 따라 조사지점, 조사 시기(계절), 횡수, 항목, 등의 선정에 따라 평가의 질이 결정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제시를 할 필요가 있음
- 동·식물상 조사의 경우 분류군별 특성을 고려하여 가장 출현을 많이 하는 시기에 조사를 시행할 필요가 있음(예·조류: 겨울철새 반드시 포함하여 2회, 포유류: 늦가을 또는 이른 봄, 어류: 산란시기 등)

- 지표수질의 경우 2회 측정을 갈수기, 평수기를 포함하여 실시할 필요가 있으며, 유량만 가능한 경우 수질 및 유량 상관관계 파악을 위해 추가하여 검토(물리적으로 불가능할 경우 중요 하천만 선정하여 표본적으로 실시하는 방안 검토)할 필요가 있음. 또한 문헌조사 국가측정망 뿐만 아니라 광역시·도 및 지자체 측정망 및 자체 측정자료를 수집하여 일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수환경의 보전 항목의 경우 수질 뿐만 아니라 수리·수문 분야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여 계획하는 것이 적절함. 일부 내용은 향후 검토할 것으로 기대되어 있으나 오염부하량 예측 및 수질예측(수질모델링) 부분은 추가하여 검토하는 것이 필요함. 특히 전략환경영향평가시 공사시 및 운영시 비점오염원 관리방안 제시, 우수유출량 변화에 따른 홍수저감, 토사유출 저감방안 뿐만 아니라 불투수면 증가에 따른 전반적인 물순환 회복방안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또한 충청남도 물순환관리 중장기계획(2016.8) 내 중점관리 하천, 호소 수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자연환경의 보전 항목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경우 해당 하천 지자체의 멸종위기종 분포, 야생동식물 서식현황(해당 시·군 비오톱 지도 참고), 비오톱 등급현황, 국가 및 충청남도 광역생태축을 고려한 해당 하천 산림생태축 및 하천생태축 현황, 산림생태경관보전지역, 하천생태경관보전지역, 습지생태경관보전지역, 수생태계 건강성 평가자료 등 다양한 데이터 및 문헌자료를 충분히 검토하고 고려하여 평가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기타 항목, 범위, 방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별도 의견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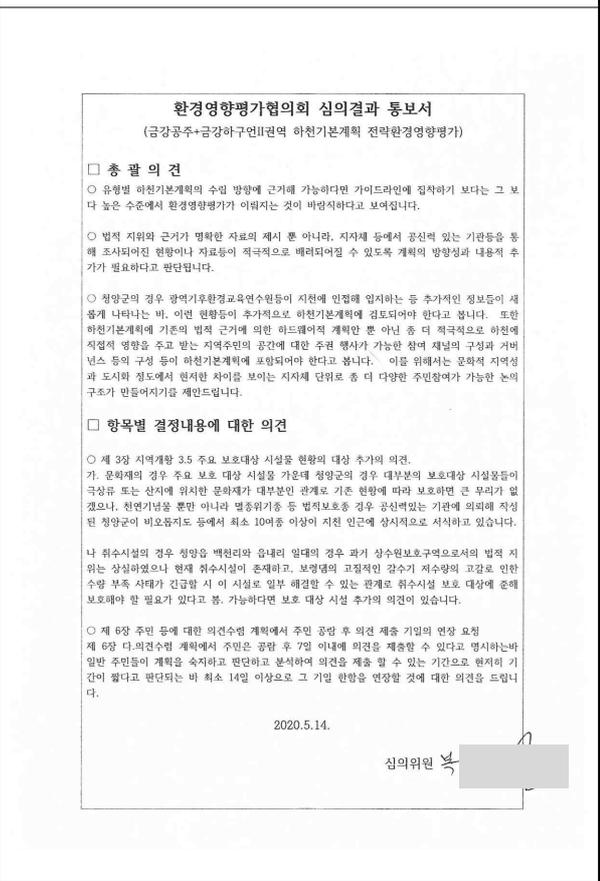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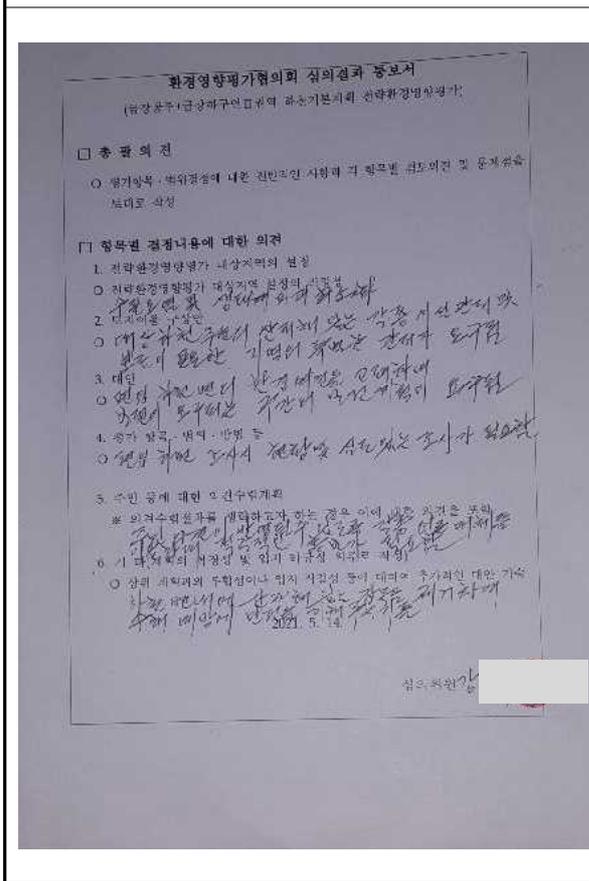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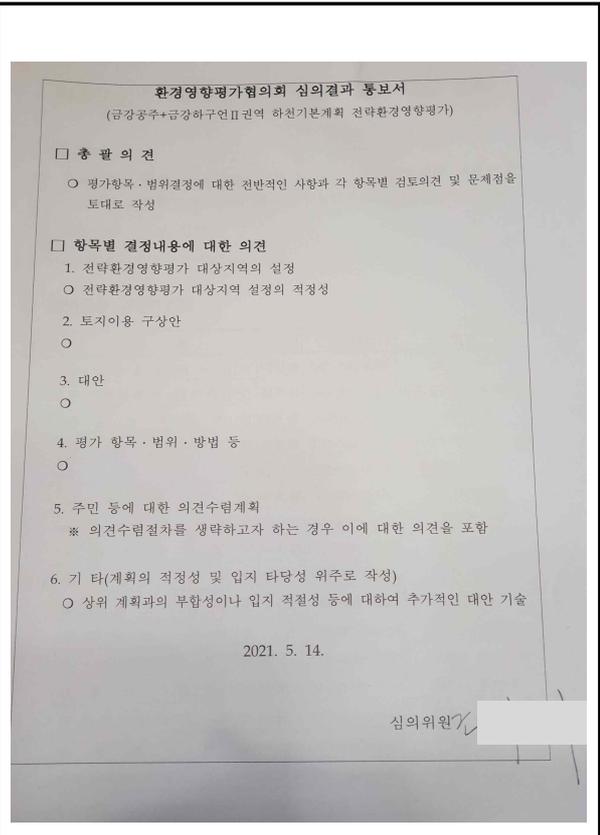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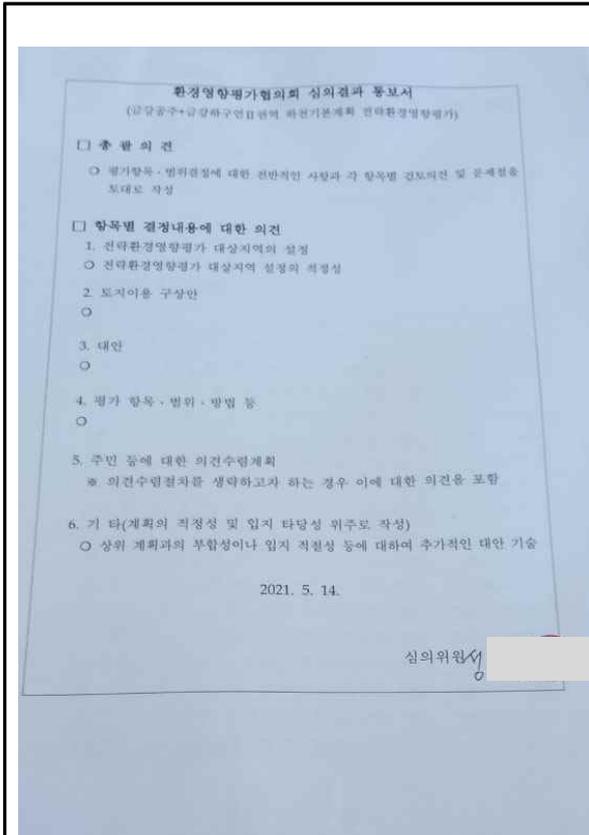
6. 기타

-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부분의 검토 및 지속가능한 대안 제시를 위하여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및 해당 지자체에서 최근 수립한 환경보전종합계획, 자연환경보전심천계획, 광역생태네트워크

<p>○ 계획하진 주변에 위치하는 상수원보호구역 및 취수시설 등을 파악하여, 개발사업에 따른 상수원 및 하천 수질 등 수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저감방안을 수립하여야 함.</p> <p>○ 수질 현황 및 연관된 수질관리계획과 연계하여 목표수질을 설정하고, 수질 보전 및 관리방안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사업으로 인한 하류수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저감대책을 마련하여야 함.</p> <p>○ '온실가스 항목 환경영향평가 평가지침'(환경부, '15.12.9. 개정)에 따라 공사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및 저감목표를 설정하고, 저감목표에 따른 저감대책을 강구하여야 함.</p> <p>○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생시 이행사항을 준수할 수 있도록 이행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제시하여야 함.</p> <p>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p> <p>○ 주민설명회는 관련 이해당사자가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공고 외 이·동장을 통한 충분한 홍보와 더불어 연사무소, 마을회관 등에 관련서류를 비치 열람토록 하는 등 충분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함.</p> <p>○ 인근 지역주민들의 생활환경 등에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관계 행정기관 및 지역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환경영향 저감방안을 강구하여야 함.</p> <p>6. 기타(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 타당성 위주로 작성)</p> <p>○ 동 사업과 관련된 상위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및 부합 여부를 검토·제시하여야 함.</p> <p>○ 하천구조물 계획시 하천에 대한 현장조사 등을 통해 하천현황을 충분히 파악하고 현지여건을 감안하여 인공적 변형을 최소화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며, 무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제방, 보 등 콘크리트 구조물에 의한 인공구조물 설치를 제한하여야 함.</p> <p>○ 계획홍수량의 산정에 이용되는 강우량 등 자료는 최신자료 인용</p> <p>○ 항목 계획 수립시 어도할 계획할 경우, 서식하는 어종의 특성을 감안한 어도 형식결정이 중요하며 세굴로 인하여 어도와 하상이 이격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함.</p> <p>○ 주민 의견수렴 시 대상 지역 주민들이 공람, 설명회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추진 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영향을 포함하여 사업 전반에 대해 주민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히 설명하여야 함.</p> <p>○ 하천기본계획 수립 관련 사항은 하천기본계획 수립지침(2018, 국토부), 충청남도 하천기본계획 업무 매뉴얼(2020, 충남도)에 따라 수립해야 하며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제32조에 따라 충청남도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함.</p> <p>2021. 5. 18.</p> <p>심의위원 김 [redacted]</p>	<p>대전형 뉴딜(New Deal), 새로운 대전(New Daejeon)을 위한 시민과의 약속입니다</p> <p> 대전광역시 </p> <p>수신자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건설관리과장) (경유)</p> <p>제목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의견 통보(금강공주+금강하구연 II 권역 하천기본 계획)</p> <p>1. 건설관리과-1365(2021. 4. 27.)호와 관련입니다.</p> <p>2. 대초와 관련 금강공주+금강하구연 II 권역 하천기본계획 관련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서면 심의 의견을 불일과 같이 통보합니다.</p> <p>불일 심의결과 통보서 1부, 끝.</p> <p></p> <p>주무관 [redacted] 자선총괄팀장 [redacted] 기획환경정책과 201 5. 18.</p> <p>합조사 주무관 [redacted]</p> <p>시행 기획환경정책과-5752 (2021. 5. 20.) 접수 건설관리과-1571 (2021. 5. 20.)</p> <p>우 35242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둔산동, 대전광역시청) / http://www.daejeon.go.kr</p> <p>전화 042-270-5441 전송 042-270-5400 / ntk9885@korea.kr / 비공개(5)</p> <p>실고 관리할 우리 김 새주소, 언제 어디서나 도문될수있습니다.</p>
<p>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결과 통보서 (금강공주+금강하구연II 권역 하천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p> <p>□ 총괄 의견</p> <p>○ 하천기본계획 수립시 사업계획 부지와 주변지역의 지형, 수계 및 환경현황 등을 고려하여 사업시행으로 적·간접적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범위를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으로 설정하고, 그 범위 설정근거 또는 사유를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하여야 함</p> <p>□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p> <p>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p> <p>○ 계획하천을 모두 포함한 대상지역 설정은 적정함</p> <p>2. 토지이용 구상안</p> <p>○ 식생보전등급, 표고, 경사도 등을 고려하여 토지이용계획 대안을 비교·검토하여야 함</p> <p>○ 하천기본계획 수립시 하천시설물 능력검토를 통해 필요한 구간에 한하여 설치할 요망</p> <p>3. 대안</p> <p>○ 수단·방법 대안 검토 중 하상굴착이 아닌 확폭 및 제방보축 대안은 적정</p> <p>○ 환경보전목표 및 달성방안, 개발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No Action 을 포함한 3개 이상의 대안 설정</p> <p>4.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p> <p>○ 동·식물상 현지조사는 동·식물의 활발한 활동(출현)시기 등을 고려하여 면 밀히 조사하여야 함</p> <p>○ 사업계획 부지 주변에 개발 중이거나 예정인 사업 등을 조사하고 영향 예측 시 누적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함</p> <p>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p> <p>○ 삼성진 주변 주민들에게 설명회 및 초안 공람을 통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하여야 함</p> <p>6. 기타(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 타당성 위주로 작성)</p> <p>○ 의견 없음</p> <p>2021. 5. 18.</p> <p>심의위원 이 [redacted]</p>	<p>프로-N19, 함께하면 극복할 수 있습니다</p> <p> 대전광역시 유성구 </p> <p>수신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건설관리과장) (경유)</p> <p>제목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서면심의 의견서 회신</p> <p>1. 귀 기관의 무궁함 발전을 기원합니다.</p> <p>2.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건설관리과 - 1365(2021.4.27.)호와 관련한 "금강공주+금강하구연 II 권역 하천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사업의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서면심의 의견서를 보내드립니다.</p> <p>불일 서면심의 의견서 1부, 끝.</p> <p></p> <p>대기관리팀장 [redacted] 부분청장인 [redacted] 2021.5.24</p> <p>합조사 [redacted]</p> <p>시행 부분청과-9935 (2021. 5. 24.) 접수 건설관리과-1602 (2021. 5. 24.)</p> <p>후 34139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11 (어은동), 부분청과 대기팀 / www.yuseong.go.kr</p> <p>전화번호 042-611-2354 팩스번호 042-611-2370 / hkh84739@korea.kr / 대국민 공개</p> <p>개인정보는 이용목적에 달성되면 반드시 파기하겠습니다</p>

<div style="text-align: center;"> <p>환경영향평가준비서 서면심의 의견서 (금강공주+금강하구언 II권역)</p> </div> <ol style="list-style-type: none">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가준비서(p7) 제2장 "대상지역 설정"에 따라 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토지이용구상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련법 및 절차 등 준수하며 평가준비서에 계획된 내용대로 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대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가준비서(p38) 제4장 "대안의 설정"에 따라 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가준비서(p48) 제5장 "평가항목 및 범위 등의 설정"에 따라 본 계획의 수립 및 시행하기 바라며, 특히, 평가항목 선정시에 계획의 적정성, 입지의 타당성 등 관련법 검토 기타(평가준비서 작성내용 및 평가항목 결정시 고려사항 등을 참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 계획 수립·시행시 관련법 검토 및 관련기관(부서) 등 사전협의 <p style="text-align: right;">2021. 5. .</p> <p style="text-align: right;">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 한 [redacted]</p>	<div style="text-align: center;"> <p>시민주권 특별자치시 행정수도 세종</p>  <p>세종특별자치시</p>  </div> <p>수신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건설관리과장)</p> <p>(경유) 제목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평가준비서 심의의견 제출(금강공주+금강하구언 II)</p> <p>1.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건설관리과-1365(2021.4.27.)호와 관련입니다.</p> <p>2. 위호와 관련, "금강공주+금강하구언 II권역 하천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에 대한 심의결과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p> <p>붙임 1. 심의결과 통보서(금강공주+금강하구언 II권역).</p>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 <p>세종특별자치시 환경정책과장 직인</p> </div> <hr/> <p>주무관 [redacted] 환경정책담당 [redacted] 환경정책과장 직인</p> <p>일 2021. 5. 14.</p> <p>합조자 [redacted]</p> <p>시청 환경정책과-17575 (2021. 5. 19.) 접수 건설관리과-1569 (2021. 5. 20.)</p> <p>후 30150 세종특별자치시 호국로 19 6층 (보합동) / http://www.sejong.go.kr</p> <p>전화번호 044-300-4222 팩스번호 044-300-4219 / bkwjy@korea.kr / 비공개(5)</p> <p style="text-align: right;">행정수도 헌법, 국가균형발전의 시작입니다.</p>
<div style="text-align: center;"> <p>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결과 통보서 (금강공주+금강하구언II권역 하천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p> </div> <p><input type="checkbox"/> 총괄 의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 물관리 기본계획, 금강유역물관리계획 및 금강 자연성 회복선도사업과의 연계성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계획 비교표 작성 반영 등) 필요 <p><input type="checkbox"/>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견없음 토지이용 구상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견없음 대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견없음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견없음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견없음 기 타(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 타당성 위주로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획시행 후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강대 예측 생활계(영업계 등), 산업계, 토지계 오염배출부하량에 대한 예측 필요 <p style="text-align: right;">2021. 5. 14.</p> <p style="text-align: right;">심의위원 이 [redacted]</p>	<div style="text-align: center;"> <p>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결과 통보서 (금강공주+금강하구언II권역 하천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p> </div> <p><input type="checkbox"/> 총괄 의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가항목·범위결정이 적정함 <p><input type="checkbox"/>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이 적정함 토지이용 구상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토지이용 구상안이 적정함 대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견없음(금회 선정된 대안이 적정함)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구천 하천수질 및 하천저질에 대한 환경영향 조사지점 추가선정 필요 상수원보호구역 여건 고려 필요 유입소하천 저점별 또는 지점간격 조정 등을 통해 점오염 요인 파악 필요 유구천의 경우 유구읍소재지 주변지역에 친수시설이 밀집되어 있으므로 환경친화적 토지이용방안 조사·예측 시 공주시 건설과, 유구읍과 협의 필요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구천, 마곡천의 경우 상수원보호구역, 야생동물 보호구역 주변지역에 포함되어 환경에 대한 관심도가 높음으로 필히 주민설명회 개최를 통한 주민의견 수렴 필요 기 타(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 타당성 위주로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구천 생태하천복원사업 사후환경조사 및 모니터링용역을 공주시 환경과에서 추진중(15.11~22.5)으로 용역 결과물을 사전에 협의하여 반영필요 (용역사) ㈜이산 담당자 정대설 차장 031-436-8347 <p style="text-align: right;">2021. 5. 14.</p> <p style="text-align: right;">심의위원 심 [redacted]</p>

<p style="text-align: center;">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금강공주+금강하구언II권역 하천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p> <p>□ 총괄 의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항목·범위결정이 적정함 <p>□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이 적정함 2. 토지이용 구상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지이용 구상안이 적정함 3. 대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견없음(금회 선정된 대안이 적정함) 4.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구천 하천수질 및 하천저질에 대한 환경영향 조사지점 추가설정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수원보호구역 여건 고려 필요 - 유입소하천 지점별 또는 지점간격 조정 등을 통해 점오염 요인 파악 필요 ○ 유구천의 경우 유구읍소재지 주변지역에 친수시설이 밀집되어 있으므로 환경 친화적 토지이용방안 조사·예측 시 공주시 건설과, 유구읍과 협의 필요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구천, 마곡천의 경우 상수원보호구역, 야생동물 보호구역 주변지역에 포함되어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으므로 별히 주민설명회 개최를 통한 주민의견 수렴 필요 6. 기타(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 타당성 위주로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구천 생태하천복원사업 사후환경조사 및 모니터링용역을 공주시 환경과에서 추진중(15.11~22.5)으로 용역 결과물을 사전에 협의하여 반영 필요 (용역사) ㈜이산 담당자 정대섭 차장 031-436-8347 <p style="text-align: center;">2021. 5. 14.</p> <p style="text-align: right;">심의위원 심 [redacted]</p>	<p style="text-align: center;">다 함께 만드는 청양! 더불어 행복한 미래!</p> <p style="text-align: center;">청 양 군</p> <p style="text-align: center;">수신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건설관리과장) (경유)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심의결과 통보서 제출(금강공주+금강하구언 II권역 하천기본계획)</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설관리과-907(2021.03.15.)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금강공주+금강하구언 II권역 하천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심의결과 통보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p>붙임 심의결과 통보서 1부. 끝.</p> <p style="text-align: center;">청 양 군 청양군수인 [redacted]</p> <p>주무관 [redacted] 환경지도팀장 [redacted] 환경보육과장 [redacted] 전화 2101.5.20. 협조자 [redacted] 시행 환경보육과-27694 (2021. 5. 21.) 접수 건설관리과-1589 (2021. 5. 21.) 주 33323 충청남도 청양군 청양읍 문화예술로 222 / http://www.cheongyang.go.kr 전화번호 041-940-2232 팩스번호 041-940-2239 / yk10240@korea.kr / 비공개 내 개인정보는 철저한 자기GPI 확인의 개인정보는 소중한 정보GPI</p>
<p style="text-align: center;">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금강공주+금강하구언II권역 하천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p> <p>□ 총괄 의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강공주+금강하구언II권역 하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며 ○ 하천기본계획 수립시 하천업무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필요사업이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 요망. <p>□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강수계 단위유역(금본)를 기준으로 지천 중심 대상 지역 설정 2. 토지이용 구상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사항 없음 3. 대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시된 대안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며, 하천 횡단수렴시 자연친화적인 방안 설정 및 최소화 4.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며 전략환경영향평가 업무 매뉴얼 및 환경영향평가 범위 설정 가이드라인에 준하여 추진 요망.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공람 및 설명회시 주민 접근성이 용이한 배제 및 장소로 지정하여 추진 6.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군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대기관리권역에 해당되는 지역임. ○ 우리군 환경기초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자료 수정 필요 ○ 대상지역은 수질오염총량관리지역으로 계획년도 및 수질오염총량 단위유역별 할당부하량 검토 필요 <p style="text-align: center;">2021. 5. .</p> <p style="text-align: right;">심의위원 유 [redacted]</p>	<p style="text-align: center;">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금강공주+금강하구언II권역 하천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p> <p>□ 총괄 의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진계획에 따른 환경적 영향을 충분히 예측하고 그에 따른 대책을 수립 할 수 있도록 하고, 대상지역의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사업에 반영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p>□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하천의 유역특성에 대한 분석이 포함되어야 올바른 권역별 하천기본계획의 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2. 토지이용 구상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천기본계획임을 고려하여 의견 없음 3. 대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 사업과 관련된 상위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및 부합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제시하여야 함 4.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 항목·범위·방법은 적정하며, 지천 하류지역에 친연기념물 제533호로 지정된 미호송개 서식지가 위치하므로 계획시행에 따른 영향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함.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설명회 시,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에 단전을 기하여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고 하천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수렴 할 수 있도록 현수막 및 이장단회의 등 적극적인 주민홍보 필요 6. 기타(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 타당성 위주로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천구조물 계획시 현저여건을 감안하여 인공적 변형을 최소화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콘크리트구조물에 의한 인공구조물 설치를 최소화하여야 함. <p style="text-align: center;">2021. 5. 14.</p> <p style="text-align: right;">심의위원 노 [redacted]</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p style="text-align: center;">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금강중주+금강하구연 II 권역 하천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p> <p>□ 총괄 의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항목·범위결정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과 각 항목별 검토의견 및 문제점을 토대로 작성 * 지방하천 관리기관+ 분야별전문가그룹+지역주민대표 로 구성된 상설협의체를 구성하여 생태환경적으로 건강한하천 살고살고 다시찾고싶은 하천으로 복원되기를 소망함. <p>□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적정함]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의 적정성[적정함] 2. 토지이용 구상안 ○ [적정함] 3. 대안 ○ [적정함] 4.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 평가항목,범위,방법론에서 좀더더미일 함이 요구된다고 사료됨.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적정함] ※ 의견수렴절차를 생략하고자 하는 경우 이에 대한 의견을 포함 6. 기 타(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 타당성 위주로 작성) ○ 상위 계획과의 부합성이나 입지 적절성 등에 대하여 추가적인 대안 기술 <p style="text-align: right;">2021. 5. 14.</p> <p style="text-align: right;">심의위원 : 김 [redacted])</p>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p style="text-align: center;">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금강중주+금강하구연 II 권역 하천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p> <p>□ 총괄 의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항목·범위결정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과 각 항목별 검토의견 및 문제점을 토대로 작성 <p>□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이 적정해 보임. 2. 토지이용 구상안 ○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지역주민들과 자연환경을 배려해 계획이 추진될 수 있는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됨. 3. 대안 ○ 하천정비에 따른 하천기본계획 수립이 필요해 보임. 4.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 대체적으로 평가의 하위과 범위, 방법 등 방향성이 잘 유지되고 있음. 다만 실제 계획 추진 시 이런 방법들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단위사업 별 평가지표를 세워 추진하면 당초 평가위치를 더 살릴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주민의견 수립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할 소지가 많음. 해당 지역주민들의 주장과 요구는 당연한 권리에 해당되므로 보다 범규 내에서 소극적으로 판단하기 보다는 보다 적극적으로 주민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개선과 노력이 필요해 보임. 6. 기 타(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 타당성 위주로 작성) ○ 상위 계획과의 부합성이나 입지 적절성 등에 대하여 추가적인 대안 기술 <p style="text-align: right;">2021. 5. 21.</p> <p style="text-align: right;">심의위원 [redacted]</p> </div>
<p style="text-align: center;">-</p>	<p style="text-align: center;">-</p>